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18 September 2017

Original: English

제 72 차 회기

잠정적 의제 72(c) *

인권 증진 및 보호 : 인권 상황 및 특별 절차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사무총장 설명

사무총장은 총회 결의 71/202 에 의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가 제출한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전달하는 바이다.

*본 보고서는 관련 인권 상황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최근 정치 및 안보 전개를 반영하고자 기한을 넘겨 제출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임기 첫 해에 수행한 모니터링 및 인식 고취 활동을 살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 및 안보 상황을 개괄하며, 아울러 해당국 당국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하고자 노력한 내용도 포함한다. 특별보고관은 더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근래에 이탈한 이들과 면담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유엔 시스템 등 기타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면서 파악한 최근 사안도 다룬다. 특별보고관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변화를 도모하도록 제안하고, 해당국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시정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길 재차 촉구한다.

목차

	쪽
I. 서문	4
II. 정치 및 안보 상황	5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유엔 인권 시스템 간 협력	7
A. 특별보고관 위임 권한	7
B.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8
C.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	8
D. 유엔 인권 메커니즘	9
I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무 수행	12
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관련 전개 사항	13
A. 구금자가 처한 환경	13
B. 납치 및 가족 분리	15
C. 식량권	17
D.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19
E. 자유로운 정보 접근	20
VI. 결론	21
VII. 권고	22

I. 서문

1. 본 보고서는 지난 2016년 10월 유엔 총회 제 71차 회기에 제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 보고서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변화를 개괄하고 분석한다(A/71/402).
2. 국제공동체는 지난 수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면밀하게 살폈다. 독립적인 인권 감시 요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여러 참여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외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 양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했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하는 등 반인도범죄 책임을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세를 취하며, 몇몇 국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국 지도층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과거와 비교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했다.
3. 특별보고관은 약 일 년여 전 특별보고관직을 맡았고, 현재까지 파악된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력하여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도록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최근 전개 상황을 보면 책임 규명과 협력은 상호 배척되지 않고 되려 상호 도움이 된다. 국제공동체가 정의 실현 필요를 강조하고 보편 인권 원칙을 지지하면 할수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인권 메커니즘과 대화하여 적어도 일부 영역에서는 인권 의무를 준수하려는 듯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공동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권 메커니즘에 보고하는 과정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법, 정책 및 의사 결정 절차에 점차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4. 특별보고관은 지난 일 년여 간 바로 앞서 언급한 목표를 염두에 둔 활동 내역을 본 보고서에 개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인권을 다루는 특별보고관 위임권한 자체를 여전히 거부하지만, 특별보고관은 여러 관계자와 협력하여 해당국 내 상황 관련 정보를 수집, 기록 및 평가할 수 있었다. 특별보고관은 수집한 데이터를 살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 공정성,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했다. 2016년 말에서 2017년 사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탈한 이들로부터 들은 진술도 본 보고서에 반영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이 거짓 증언을 한다고 주장하나, 수집한 정보는 서로 다른 정보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이라 보기 힘들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당국 입장을 포함하여 현지에서 증언을 수집하고 분석하길 희망하나, 해당국 정부는 국가 방문 요청을 지속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II. 정치 및 안보 상황

5.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동안 몇 가지 주요 상황 변화가 있었는데,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가장 주목을 끌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7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미사일 총 13발을 발사했는데, 지난 30년 동안 성공한 미사일 발사 시도 총 수보다 많다. 2016년 9월 9일 핵실험을 실시했고, 그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결의안 2321(2016)을 채택했다. 결의 2321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탄도 미사일 및 핵 무기를 개발했다며 규탄했다. 안보리는 2017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상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안보리는 결의 2356(2017)에 정부관계자 일부를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대상으로 명시하고, 채굴 및 금융 관련 일부 무역 기관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안보리는 2017년 8월 5일 결의안 2371(2017)을 통과시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삼분의 이 수준으로 낮추고자 했다. 이에 석탄, 철광석, 납, 수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관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제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2017년 9월 3일 수소 폭탄 실험을 발표했고, 이에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¹

6. 특별보고관은 안보리 제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생에 상당히 중요한 일부 경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제재 조치 초안을 마련하고 수정할 때 인권을 더욱 심도있게 고려하여 민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길 재차 촉구한다. 안보리 제재는 징벌적인 성격이 아니며,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등 인권 향유에 의도치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² 일례로 특별보고관은 안보리 제재로 암 환자가 필요로 하는 화학 치료제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방적 강제 조치가 인권 향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피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negative impact of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은 국제 기구는 경제 제재 조치를 결정할 때 “제재 대상 국가 내 취약 계층이 제재 조치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기에 (...) 개별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국제 제재 조치가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신뢰할만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협력할 필요가 있다.

¹ 본 보고서는 2017년 8월 31일까지 상황을 반영하나, 수소 폭탄은 단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정치 및 안보 상황에 포함하여 다룬다.

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2014)도 “안보리 제재 조치 및 국가별 독자 제재 조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했다. (A/HRC/25/63, 문단 94 (a) 참조)

³ 해당 평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일반 논평 8번(1997)을 지칭한다. 해당 일반 논평은 경제 제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향유 간 연관성을 검토한다. 관련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A/71/287을 참조한다.

7. 정치 및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여타 국가 정부는 호전적인 선언을 연이어 했다. 수 차례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미합중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발사 대응 조치로 2017년 4월 동아시아에 항모 전단을 투입했다. 특별보고관은 관련 국가 모두에 분쟁을 시사하는 수사(conflict rhetoric)를 자제하고 무력 충돌을 조장하지 않도록 촉구했다.⁴ 하지만 여전히 적대감을 부추기는 표현과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일반 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보호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 논의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본다. 국제공동체는 논쟁이 확대되어 무력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역내 군비 확대 경쟁을 방지하며, 인권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여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8. 대한민국은 전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0년 대 초 햇볕정책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으며, 햇볕정책은 남북 양측 간 관계를 정상화와 경제 협력을 도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방 및 인도적 분야에서 남북 대화를 재개할 계획을 밝혔다.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이 2017년 5월 재개되었으나,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국방 관련 양자 대화는 개최되지 않았다. 문재인 행정부는 2017년 6월 미국 초고도 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THAAD)를 배치를 일시 중단하고, 환경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비핵화와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연설을 통해 밝혔다. 또한 미국을 비롯해 역내의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안보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대한민국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한민국과의 논의는 근래 몇 달 간 고조된 적대감 여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9.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연설 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화를 요청했고,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를 환영했다고 파악했다. 이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지도자가 과거 몇 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는데, 2015년 이후 최고지도자가 두 차례 대화를 요청한 것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해외 연설 장소로 베를린을 택한 점을 비난했다고 알려졌다. 베를린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일의 방식 때문이다.⁵ 더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지속하고 있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⁴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인권 전문가, 한반도 적대감 고조 중단 촉구 (2017년 4월 25일)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526&LangID=E>.

⁵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동베를린’으로 구분되던 지역에서 연설을 했고, 대한민국은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통일상을 명시했다. 배현정, *코리아 헤럴드*, “문재인 대통령 피르버 재단 초청 연설 전문” (2017년 7월 7일)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707000032>.

약속을 신뢰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 및 미국과 별도로 대화를 재개하여 평화를 도모할 여지가 있다. 더불어 개성공단 재개를 남북 양측 모두가 논의 의제에 올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보고관은 남북 간 관계 회복(rapprochement) 노력을 환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기회를 빌어 인권을 논의하길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유엔 인권 시스템 간 협력

10. 유엔은 설립 때부터 인권을 실현하는 데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주요 임무로 삼았다. 유엔 헌장 제 1 조 3 항과 세계인권선언 서문에도 이러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회원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력 범위를 확대하려 시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헌장을 따를 의무가 있고, 일부 인권 조약 당사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 뿐 아니라, 기타 인권 메커니즘과 국제 및 역내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하고자 했다. 특별보고관은 어떤 형태의 국제 협력이 됐든, 협력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 문제를 간섭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확실히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특별보고관은 점진적으로 여러 행위자가 참여하는 전략을 통해 현장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행위자가 취한 조치를 한 데로 모을 수 있으며, 인권 시스템의 주요 요소인 특별보고관 위임권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A. 특별보고관 위임 권한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특별보고관 위임권한을 계속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2016 년 11 월과 2017 년 7 월 공식 국가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허용하지 않았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제네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상임대표부와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뉴욕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은 이전에 특별보고관이 아르헨티나 법학 교수 신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사적 방문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자 했다.⁶ 특별보고관이 이해하기로, 해당 제안에 따라 방문할 시 특별보고관은 학술 행사에 참석하거나 유엔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인권을 반영하도록 전문가로서(technical)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논의를 이어갈 의향을 밝혔으나, 제네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특별보고관직을 유지하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특별보고관은 여러 역내 및 국제 시민사회단체 도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⁶ 뉴욕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기자회견 (2016 년 11 월 15 일)
<http://webtv.un.org/media/watch/kim-in-ryong-dprk-press-conference-15-november-2016/52112677700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공식 접촉을 기회로 특별보고관과 공식적으로 협력하길 촉구한다.

B.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 사무소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 사무소(이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와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2015년 6월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⁷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 주민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등 정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인식 고취 및 지평 확대 활동을 수행했고, 정부, 시민사회단체 및 기타 이해당사자와 협력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특별보고관 임무 수행을 지원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16년 12월 한반도 내 비자발적 가족 분리를 인권으로 접근한 주제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비자발적 가족 분리를 해결하도록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인권을 고려하길 제안한다.⁸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한반도 내 비자발적 가족 분리를 다룬 주제별 보고서 권고를 이행하길 촉구하며, 더불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논의할 만한 주제별 분야를 모색하길 촉구한다.

C.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은 독립전문가그룹(이하 “독립전문가그룹”)과 협력을 거부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31/18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2017년 3월 특별보고관이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부속서로 권고를 제시했다.⁹ 독립전문가그룹은 국제 규범과 기준에 따라 인권 침해를 다루도록 다방면으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거나 임시국제재판소(ad hoc international tribunal)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피해자 및 이해당사자와 포괄적으로 조율 및 협의하여, 책임 규명 관련 의견을 듣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권고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추가 자원을 투입하여 기존 모니터링 및 문서화 작업을 국제 규범 및 기준에 맞춰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국제 형사 사법 전문가가 가용 정보와 증거를 평가하도록 지원하여,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향후 조사 및 소추 전략을 고안하며, 국제재판소 또는 국제적으로 지원하는 적절한 재판소 청사진을 마련토록 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 34/24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추가로 지원하고, 기존 모니터링 및 문서화 작업을 한층 개선하고, 향후 책임 규명 절차에 적용할만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 정보 및

⁷ 인권이사회 결의 25/25 참조

⁸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단의 아픔: 인권으로 접근한 한반도 비자발적 가족 분리” (2016년 제네바)

⁹ A/HRC/34/66.add1 참조

증거 저장소(repository)를 설치토록 했다. 특별보고관은 결의 34/24 이행을 면밀하게 살필 것이다.

D. 유엔 인권 메커니즘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서 언급한 복수의 위임권한과 협력을 거부한 반면, 근래에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하고자 조치를 취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을 2016년 12월 6일 비준했다. 이로써 총 다섯 개 주요 인권 조약을 비준했다.¹⁰ 특별보고관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을 환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협약 비준을 기회로 사회에 특정 집단이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¹¹

15.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2017년 5월 3일부터 8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 초대로 공식 방북했다. 방북 기간 동안 보건상, 조선장애자보호련맹 등 정부관계자와 만나고, 평양과 황해남도 봉천에 위치한 시설 몇 곳을 방문했다.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자국어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등 개선 사항을 강조했다. 한편 장애를 의료적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지배적이어서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데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정부 요청을 수용하여 접근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 표준 관련 기술 지원에 동의했다.¹²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방북 후 파악한 내용과 권고를 보고서에 담아 2018년 3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2017년 11월 심의 예정이다. 사전실무그룹(pre-sessional working group)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달할 질문 등을 포함하여 쟁점 목록을 마련했다. 쟁점 목록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취한 조치, 여성의 사법 접근성 보장을 위해 변호사 조력 등 기타 필수 요소 접근 가능 여부, 강제 복송 여성 보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한다(CEDAW/C/PRK/Q/2-4 참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에 제출한 보고서는 2017년 9월 심의 예정이다. 사전실무그룹이 마련한 쟁점 목록에는 아동을 고문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며 [아동 고문] 가해자를 제재하도록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가] 승인을 받지 않고 국외로 간 아동이 처벌받지 않도록

¹⁰ 해당국이 비준한 주요 인권 조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다.

¹¹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인권 전문가 - 장애인권리협약을 기회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개선 촉구” (제네바, 2016년 12월 20일)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051&LangID=E>.

¹²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방북 모두발언문” (2017년 5월 8일)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610&LangID=E>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 시설에 있는 아동, 영양실조 아동, 부모 둘 다, 혹은 한쪽이라도 한반도 태생이 아닌 아동 현황 및 상황 등과 관련하여 최신 통계치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CRC/C/PRK/Q/5 참조). 특별보고관은 조약기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현장 방문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좀 더 세부적인 필요와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국가 방문,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아동권리위원회 국가 보고서 심의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특히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 및 조약기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문성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 지원을 받아 자국 법률이나 관련 공공 정책에 인권을 반영하여 개선할만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최신 국가 통계를 제공하여, 목표, 기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가능케 할 성과 지표 등을 갖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2014 년 제 2 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 Review-UPR)에서 수용한 여러 권고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¹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관련 국가 기관 및 단체와 포괄적으로 협의했다”고 주장했다.¹⁴ 협의가 이루어진 과정 및 방식, 또한 유엔이 기술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2010 년 녀성권리보장법을 채택하는 등 이전 조치를 볼 때 보편적 정례 검토 및 기타 유엔 메커니즘이 인권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법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이행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엔 간 전략 지원 프레임워크 (이하 “전략프레임워크”)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권고를 반영하여 상주조정실 전략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전략프레임워크 이행 현황을 정부와 함께 살피도록 규정을 마련했다.¹⁵ 더불어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용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권고 이행 여부를 살피고 있다.¹⁶ 특별보고관은 앞서 언급한 조치를 지지하며, 가능하다면 관련 유엔 기관과 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당국이 수용한 권고 이행을 취하길 촉구한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 인권 조약에 가입하거나 인도적 지원 물자를 투명하게 배분하도록 하거나 자국민 해외 여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 이행할 수 있다. 해당국 정부는 국가 기관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권고도

¹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용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권고 목록
https://www.upr-info.org/sites/default/files/document/korea_dpr/session_19_-_april_2014/a_hrc_wg.6_19_prk_1_annex_e.pdf.

¹⁴ 상동

¹⁵ <http://kp.one.un.org/content/dam/unct/dprk/docs/DPRK%20UN%20Strategic%20Framework%202017-2021%20-%20FINAL.pdf>

¹⁶ http://www.nkdb.org/en/news/notice_list.php?board=notice_en&act=view&no=109&page=1&search_mode=&search_word=&cid=&goUrl=/en/news/notice_list.php

수용하였는데, 이를 활용하여 국제공동체와 협력하고 기술 지원을 받을만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유엔 회원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수용한 권고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확실히 할 의무가 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는 국가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platform)이다. 하지만 권고가 실제 이행되지 않는다면 권고 수용 자체는 의미가 없다. 유엔 회원국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이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19.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상주조정실이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권고 이행 현황을 살피도록 독려한다. 당국과 협력할 때 2013 인권최우선전략(Human Rights Up Front) 지침을 바탕으로 하길 권고한다. 인권최우선전략은 유엔 사무총장이 중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승인한 전략으로, 특히 식량 배급이나 의료 서비스가 여의치 못할 때 최취약 집단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일례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시 수용한 보건 관련 권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최근 집계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아동 1 만 1000 명과 성인 27 만 1000 명이 결핵에 걸렸다.¹⁷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WFP)은 세계식량계획이 지원하는 탁아소 수용 아동 25.4 퍼센트가 발육 부진을 겪는다고 파악했는데,¹⁸ 정부가 제 2 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아동의 기본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약속과는 배치된다. 더하여 구금자 현황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정부가 공식으로 교정 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독립 감시 요원이 접근할 수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연 재해에 취약하고, 때문에 구금자는 더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태풍 라이언록이 2016 년 9 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상륙했을 때,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동북 지역에 위치한 구금 시설 및 취약 계층이 상주하는 시설에 인도주의 활동가 접근을 전적으로 허용하도록 당국에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권고 61 을 유보없이 수용한 점을 상기한다. 해당 권고는 “취약 계층에 국제 지원 물자를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권고한다. 특별보고관은 현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거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는 유엔 직원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특별보고관은 대상 주민에게 가닿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자국 내 상주 유엔 기관이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촉구한다. 특별보고관은 앞서 언급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주조정실과 상주조정관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¹⁷ https://extranet.who.int/sree/Reports?op=Replet&name=/WHO_HQ_Reports/G2/PROD/EXT/TBCountryProfile&ISO2=KP&outtype=html

¹⁸ 세계식량계획, “DPR Korea Country Brief” (2017 년 3 월)

I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무 수행

20. 특별보고관은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세 차례 공식 임무를 수행했다. 첫 방문으로 2016년 대한민국과 일본을 각각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이어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방문했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정부관계자, 서울유엔인권사무소, 비정부기구, 인권 옹호 단체 및 외교계 인사와 만났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돕는 시설도 방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 여성의 정착을 돕는 시설에도 방문했는데,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는 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납치한 경우로 아직 생사 여부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납치 피해자들이다.¹⁹

21. 특별보고관은 2017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역내 시민사회단체가 인권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했고, 인도적 활동 및 평화 구축 노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분쟁 방지와 인도적 지원에 힘쓰는 비정부단체 다수가 한 자리에 모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도 자리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화를 촉진하고, 인적 교류를 독려하며, 식량 및 기타 기본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한 여러 활동(outreach)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환영하며, 인도적 지원 단체와 종교 단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관계를 맺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수혜자 인권을 개선하길 독려한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체계 설명 자료, 국제 조약문,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문 등 주요 인권 국영문 문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시스템과 유엔 상주조정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관련 인권 문서를 배포하길 요청한다. 인권 문서를 배포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비슷한 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와 비견할 수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관료가 전자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접근할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22. 특별보고관은 2017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외교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만났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이들을 만났고,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남성도 만났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 근래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성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도 방문했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대화 재개를

¹⁹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인권 전문가 인간 중심 접근 촉구” (2016년 11월 25일)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0937&LangID=E>

추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을 환영하며, 또한 남북 간 대화 시 인권을 주요 대화 의제로 올리도록 강조한다. 아울러 특별보고관이 수집한 진술과 정보를 근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한다.²⁰ 특별보고관은 2017년 말 동북아시아에 방문할 예정이다.

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관련 전개 사항

23. 특별보고관은 앞서 언급한 국가 방문 시,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 사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난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여러 진술을 수집할 수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650 명이 2017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도착했고, 84%는 여성이라고 들었다.²¹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퍼센트 감소했고, 국경 통제가 강화됐기 때문일 수 있다. 특별보고관이 만난 이들 대부분은 함경북도나 량강도 출신이며, 일부 평양 거주자도 있다. 면담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 상황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특히 내륙 지방 상황 파악은 어렵다. 하지만 면담과 기타 정보 출처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참고하여 다음 다섯 영역과 관련하여 최근 전개 상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했다. 구금 환경, 비자발적 가족 분리, 식량권, 부정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정보 자유권이다.

A. 구금자가 처한 환경

24. 특별보고관이 수집한 진술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대다수가 정치범 수용소를 두려워한다. 심지어 누군가 실종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을 것이라 생각할 정도이며, 현재 14호, 15호, 16호, 25호 네 곳이 운영 중으로 파악된다. 2017년 탈북한 남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모두 자라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듣는다. 누군가 실종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겠거니 한다. 내 친구도 중국산 위성 전화를 쓰다가 2014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 후 친구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정치범 수용소 내 구금자 상황을 파악할만한 정보가 충분치 않지만, 201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구금자 수를 8만에서 12만으로 추정했다(A/HRC/25/63 참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과거 “정치범 수용소는 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말하면서, “형법 상 로동교화형을 받은 이들은 교화 시설에서 형을 산다”고 덧붙였다(A/HRC/27/10 문단 60 참조).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준한 인권 조약 조항에 근거하여, 당국이 구금자 전원에게 대한 통계치를 제공하고 구금 환경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²⁰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특별보고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에 인권을 논의하도록 촉구” (2017년 7월 27일)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913&LangID=E>

²¹ 대한민국 관계 당국 제공 통계치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 존재를 부인하지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화 시설”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

25. 북중 국경 지역 인근 집결소 내 구금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알려진다. 2016년 중국에서 북송된 남성은 특별보고관에게 “집결소에 있으면 모두 쓰레기 취급을 받고 수시로 구타를 당한다. 경비원은 구금된 우리에게 인간 쓰레기일 뿐이라고 말한다”고 진술했다. 강제 북송 후 2012년 11월 청진 집결소에 한 달 간 딸들과 구금되었던 여성은 당시 처지를 “손발이 뭉뚱 얼어서 잠을 잘 수 없었다. 위생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고, 음식이라고는 옥수수 밖에 주지 않았다. 막내딸에게 소금국과 사용할 줄도 모르는 수저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수 차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탈출하려 시도했고, 2017년 3월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탈출에 성공한 때까지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계호원이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한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은 특별보고관이 여타 정보 출처에서 파악한 북송 피해자 여성 상황과도 일치하는데,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 구금되고 조사와 구금 기간 동안 구타를 당한다.²² 과도한(invasive) 수색이나 성추행 등 성폭행 및 젠더 폭력이 집결소에서 흔하게 발생한다고 보고된다. 또한 근래 몇 년 동안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성은, 임신한 상태에서 북송될 시 강제 낙태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 낙태가 수치심을 수반하며 피해자가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기에, 정확한 통계치를 얻기 어렵다. 강제 낙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에 반할 뿐더러, 고문을 금지하는 자국 형사소송법(2012)도 위반한다(166 조). 특별보고관은 강제 낙태 보고에 깊은 우려를 포함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여성이나 아동을 포함하여 구금자가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국내 및 국제 안전 장치를 준수하길 촉구한다.

26.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구금 환경 개선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는 보고를 접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일례로 중앙검찰소는 과거 구금 시설을 검열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지며, 임신 막달인 여성이 풀려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인민보안성이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지침(directive)을 내려 구금 시설 내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는 보고도 있다. 2010년 지침은 조사담당자가 조사 시 구금자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고, 주민이 항의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지침은 구금 중 사망 건과 관련하여 계호원 책임을 물었다고 알려진다. 만약 앞서 언급한 두 사례가 확인된다면 고무적인 변화이다. 특별보고관은 앞서 언급한 지침이 문서로 존재한다면 이를 제시하고, 구금자를 보호하는 법령을 제정하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의 기관과 협력한다면 구금 환경을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7. 미국 국적자 오토 워비어는 2017년 6월 19일 사망했다. 오토 워비어는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15년 형을 받았다. 오토 워비어 사망 건은

²² 관련하여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 주민을 보호하도록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고문당하며 국외 활동에 대해 심문을 받는다.” 휴먼라이츠워치, “대한민국: 중국에 억류된 북한 난민들 위해 도움을” (2017년 6월 29일), <https://www.hrw.org/news/2017/06/29/south-korea-look-for-help-north-korean-refugees-china>

외국인 구금 환경에 의문을 제기한다. 오토 워비어는 2016 년 1 월 체포되었고, 영사 접견이나 독립적인 변호사 조력(representation)을 받는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오토 워비어가 식중독에 걸렸고, 계호원에게 수면제를 받고 2016 년 3 월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오토 워비어는 15 개월 후 혼수 상태로 감옥에서 풀려났다. 미국 내 의사 다수는 오토 워비어 뇌세포 상당 부분이 손상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²³ 특별보고관은 오토 워비어 석방 직후 성명서를 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자에게 적절한 의료 처치를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오토 워비어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촉구했다.²⁴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캐나다 국적자 임현수를 8 월 9 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석방했다. 임현수는 반공화국 적대 행위 기도 혐의로 2015 년 2 월부터 구금되었다. 특별보고관은 임현수 석방을 환영하는 한편,²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아직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 국적자 여섯 명과 미국 국적자 세 명이 아직 구금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당사국으로, 구금자를 기본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일례로 비엔나 협약 제 36 조는 접수국에 구속된 외국인에게 영사관원과의 통신과 접촉에 관하여 자유를 보장하며, 영사관원이 법적 대리를 주선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보고관은 앞서 언급한 외국인 구금 건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직접 소통하지 못해, 정부가 빈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

B. 납치 및 가족 분리

29. 특별보고관은 임무 수행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납치한 일본 및 대한민국 국적 납치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정치적 긴장 상태로 납치 문제 해결에 진전이 어렵다. 지금까지 일본 국적자 12 명과 대한민국 국적자 516 명 소재가 소명되지 못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4 년 5 월 일본과 스톡홀름 합의를 체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일본 국적 납치 피해자와 일본 국적자 후손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일본은 2016 년 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 실험을 재개하자 이에 대응하여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자 제재 조치에 반발하여 일본 국적자 소재 파악 조사를 중단했다. 가족 상봉 행사 관련 남북 간 대화가

²³ Jason Hanna, Joshua Berlinger, Emanuella Grinberg, CNN, “오토 워비어, 심각한 뇌손상 소견” (2017 년 6 월 16 일) <http://edition.cnn.com/2017/06/15/politics/otto-warmbier-north-korea/index.html>

²⁴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전문가, 미국 대학생 사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감옥 내 처우 반영”, (2017 년 6 월 16 일)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761&LangID=E>.

²⁵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인권 전문가, 캐나다인 목상 석방 환영”, (2017 년 8 월 11 일)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960&LangID=E>.

중단되었고, 양측 간 공식 소통 창구가 부재하여 납치 건을 논의하거나, 과거처럼 납치 피해자 가족을 상봉 행사 참여 희망자 목록에 포함할 지 여부 등을 논의하지 못한다.

30. 한국전쟁 종전 후 대한민국 국적자 12 만 9616 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 거주하는 가족과 상봉하고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총 2325 가족이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후 최소 한 번 친인척과 만났다. 최초 가족 상봉 행사 참여 신청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친인척과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사망했고 생존자 대다수는 80세 이상의 고령이다.²⁶ 가족 상봉 행사는 2016년 초 정치 및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열리지 못했고, 이후 남북 양측은 향후 상봉 행사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²⁷ 특별보고관은 성명문에서 남북 양 측에 가족 상봉은 생존자가 보장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고령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아무 조건없이 가족 상봉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²⁸

31. 한반도 가족 분리는 새로운 양상을 띄고, 피해자 유형도 새롭게 생겨난다. 근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되면서 비자발적 가족 분리가 초래된다. 중국이나 대한민국에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례가 많다. 특별보고관은 강제 송환 사례 다수를 전달받았다. 2016년 12월에서 2017년 7월 사이에 복수의 16세 이하 아동 등이 강제로 송환된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200여 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가 중국 전역에 구금되어 있고 송환될 예정으로 파악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를 특별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제 이주민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근거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특별보고관은 중국과 관련 대화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는 북으로 송환될 시 고문이나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제 인권법 뿐 아니라 중국 국내법도 이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²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난 이유와 무관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중국 당국에 건별로 강제 송환을 다루도록 촉구하며, 특히 재송환금지원칙을 구금 상태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 모두에게 적용하기를 촉구한다. 조사위원회가 2014년 보고서에서 중국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권고한 바이기도 하다.

32.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방문 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여성 12명 사례에 주목했으며, 마찬가지로 가족 분리의 한 형태이다. 해당 여성 12명은

²⁶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단의 아픔: 인권으로 접근한 한반도 비자발적 가족 분리(2016)”

²⁷ 박경서 교수가 대한적십자가가 신입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박경서 신입 회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도적 지원 활동을 활발히 해왔고 남북 간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

²⁸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인권 전문가, 두 달 내 남북 가족 상봉 행사 재개 지지”, (2017년 6월 13일)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732&LangID=E>.

²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 보고서(2014)와 이어진 유엔 차원 모니터링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되면, 이탈 이유와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고문과 학대에 노출된다.

중국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식당 관리자 남성 한 명과 함께 2016년 4월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이 이들을 납치했다고 주장했고, 이들 여성을 송환해야지만 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특별보고관은 가족 상봉 행사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³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에 대응했는데, 앞서 언급한 여성 12명 상황을 상기하며 강제 실종 피해자라고 2017년 7월 서면으로 주장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들 여성이 구금 되어 있지 않음을 파악했고,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들 여성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출국한 상황 설명이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목적지로 출발한다는 정보를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 국가 정부가 해당 사안을 추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으며, 여성 12명과 그 가족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남북 양측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여성 12명과 가족을 장단기적으로 보호하고, 여성과 가족이 연락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할 것이다.

33. 특별보고관은 2017년 7월 대한민국 방문 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남성도 만났다. 아내와 아들이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한다. 남성은 201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탈했는데, 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으로 나간 경우 처벌받을 위험성을 인지하지만 가족과 다시 만나고자 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여성 사례도 인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개인이 [대한민국] 당국 승인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연락을 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동조할 수 없도록 한다.³¹ 특별보고관은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제한할 때 국제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 사례를 건별로 검토하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안위와 가족 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길 촉구한다.

C. 식량권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전히 식량 안보가 상당히 취약하다.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는 만성적 식량 부족으로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국 목록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했다.³²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속적으로 기아 상태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했는데,

³⁰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인권 전문가, 두 달 내 남북 가족 상봉 행사 재개 지지”

³¹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제 4차 대한민국 정기 보고서, 최종검토의견서(concluding observations)에 국가보안법 제 7조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CCPR/C/KOR/CO/4 참조

³² 세계식량기구,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 (2016년 12월) www.fao.org/gIEWS/country-analysis/external-assistance/en/.

(2014 년에서 2016 년 사이 기준) 인구 41.6 퍼센트가 영양 부족을, (2011 년에서 2015 년 사이 기준) 아동 17.9 퍼센트가 발육 부진을 경험한다.³³ 유엔 상주조정실은 2017 년 3 월 만성 식량 불안정이 여러 인도적 문제와 연결된다고 파악했다. 일례로 2 세 미만 아동 대다수와, 임산부 및 수유부 절반이 식사 다양성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한다. 더하여 학교나 보건 시설 등에서 350 만 명이 깨끗한 물 접근성이나 청결과 위생을 보장받지 못한다.³⁴

35.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는 2017 년 상반기 강수량이 충분치 않아, 일부 작물 수확률이 30 퍼센트 내지는 50 퍼센트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유엔 기관(agency)은 6 월 말 황해남도 저수지를 살폈는데, 수위가 저수지 용량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알려진다.³⁵ 2017 년 7 월 강수로 갈수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가을에 수확할 계절 작물을 심기에는 너무 늦었고, 2017/2018 년 더 많은 곡물 수입이 필요할 수 있다.³⁶ 건기가 정부 배급량에도 영향을 미쳐, 일인당 하루 배급량이 400 그램에서 300 그램으로 줄었고, 이는 일일 목표량 573 그램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인구 70 퍼센트 가량이 식량 배급에 의존한다.³⁷

36. 국가 식량 배급 시스템이 1990 년 대 기근의 여파로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해 식량 불안정성을 악화시켰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점차 확대되는 대규모 비공식 시장(sector)에 기대어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북쪽 지방 [식량]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수년 간 반복적으로 심각한 가뭄과 홍수에 영향을 받았다. 함경북도 출신 여성은 특별보고관에게 “식량 배급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공정하게 배급되지 않는다. 모두 먹고 살 길을 찾을 수 밖에 없어, 산 중턱에서 농사를 짓거나 좀 더 위험할 수 있지만 중국과 거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식량 배급 시스템 관련 최근 보고를 보면 정책적으로 차별이 있고, 식량 접근성을 공평하게 보장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식량 배급 시스템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비정기적으로 배급을 받는다.³⁸

³³ 국제식량정책연구소, Global Hunger Index database, <http://www.ifpri.org/topic/global-hunger-index>

³⁴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17 년 3 월), <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DPRK%20Needs%20and%20Priorities%20017.pdf>.

³⁵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아태지역: 주간 인도주의 상황 보고 (2017 년 6 월 27 일-7 월 3 일): <http://reliefweb.int/report/philippines/asia-and-pacific-weekly-regional-humanitarian-snapshot-27-june-3-july-2017>.

³⁶ 세계식량기구,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Food and Agriculture special alert No. 340: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 년 7 월 20 일) <http://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faogiews-special-alert-no-340-democratic-people-s-republic>.

³⁷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아태지역: 주간 인도주의 상황 보고 (2017 년 7 월 18 일-7 월 25 일): <http://reliefweb.int/report/bangladesh/asia-and-pacific-weekly-regional-humanitarian-snapshot-18-24-july-2017>.

³⁸ 통일연구원 백서 (2016), 261-270 쪽

37. 특별보고관은 2016 년 말 기준 유엔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도적 지원 자금으로 1 억 1500 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들었다. 목표 모금액은 1 억 4200 만 달러이다.³⁹ 기부자 관심이 줄었을 뿐 아니라 정치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아 목표액 달성이 어려웠다. 국제 제재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직접 송금을 하는 데 더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됐다고도 알려진다. 특별보고관은 기부자(donor community)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원에 관심을 유지하길 호소하며, 유엔이 국제 제재 조치로 국제 지원 조달이 지체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길 촉구한다.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는 2017 년 새해 연설에서 국가경제개발 5 개년 전략을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식량 배급 시스템 결점을 국가경제개발 5 개년 전략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특히 식량 안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길 촉구한다. 경제 계획은 [국민의]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지출과 국방 및 안보 지출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 또한 만성 영양 부족을 해결하도록 별도 계획을 마련하여 인적 자원을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개발 전략은 특히 식량 접근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경제 개발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기술 지원 제공을 지지한다.

D.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39. 특별보고관이 수집한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뇌물이 언급된다. 공공 서비스 접근이나 구직 시, 이동할 때, 또는 체포 시 처벌을 피하도록 뇌물이 동원된다. 부패가 고질적이며 만연하다고 묘사되는데, 중앙 및 지방 정부 관료가 기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민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부패와 사회적 배제 간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례로 특별보고관이 만난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중 보건 체계를 설명했다. “무상 의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에게 담배나 돈 등 지불할 수 있는 것을 지불한다. 간단하게 주사를 맞거나 약을 탈 때도 돈을 내라고 한다.” 한 남성은 2016 년 중국에서 강제 복송됐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처벌 수위를 협상했다. “집결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구역 담당 보위부로 이관됐다. 대한민국행을 계획한 혐의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수도 있다고 들었다. 검사와 보위부원에게 뇌물을 먹이고 로동단련대로 갈 수 있었다. 중국에서 번 돈 3000 위안을 줬다”고 남성은 진술했다. 남성은 풀려나자마자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했다. “국경경비대에 돈을 주고 자유를 찾았다”고 남성은 말했다.

40. 비공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패가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 한편 비공식 시장 성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이 물질적으로 안정될 기회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³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활동 유엔 기관 브리핑, (2017 년 3 월 15 일, 제네바)

자유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6 조가 보장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 규약 당사국이다. 특별보고관은 이전에 평양에 거주했던 이를 만났는데, 이야기하길 “사업을 하든, 특정 지역에 거주를 얻고 싶든, 특정 집에 살고 싶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구역담당 정부관계자에게 100 달러만 주면 된다.” 해당 남성은 회사를 운영했고, 덕분에 스스로 칭하길 “중산층”에 속할 수 있었다. 사업 수익이 충분한 덕분에 정부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집을 얻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혹은 국내를 이동할 수 있었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렸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부패와 불평등을 한층 더 고착화했다.

41. 뇌물을 주고 시민적·정치적 권리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구매하는” 사례가 관찰되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에서 부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특히 부패 심화는 경제, 정치, 사회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최고지도자가 천명한 국가경제개발 5 개년 전략이 진행되는 중이기에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부패 정도를 인지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비공식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기회를 빌어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할만한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거나 실질적인 상업 활동을 반영하여 상법을 마련하거나, 또는 이동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혁이 가능하다.

E. 자유로운 정보 접근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내 통신과 국내외 간 통신을 모두 엄격하게 검열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인민반이라 불리는 이웃 감시 조직이 존재하는데, 정부는 인민반이 주민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감시하고, 보위부에 보고토록 한다.⁴⁰ 특별보고관은 근래에도 해외 시청각 자료를 엄중하게 단속한다고 들었다. 과거 함경북도에서 거주했던 이는 정부와 조선로동당 지방 조직이 근래 주민의 해외 언론 접근을 더욱 면밀하게 감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라디오 청취 감시를 강화했다. 평양 출신 남성은 2007 년부터 친구들과 대한민국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다고 진술했다. 중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장사꾼으로부터 영상 자료를 구했다. 해당 남성은 2017 년 1 월 보안원이 기습적으로 집을 덮쳐 대한민국 영상 자료를 보다가 붙잡혔다. 심하게는 사형까지 처벌받을 가능성 때문에, 보위원에게 뇌물을 주고 수 시간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탈출했다.

43. 특별보고관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을 다수 만났다.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을 고려할 때 컴퓨터 문해 능력은 일면 상층돼 보인다. 특별보고관이 이야기를 나눈 많은 이들이 빈곤한 지역 출신이더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했다고

⁴⁰ 인민반 제도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Connection Denied)” (2016), 42 쪽

말했다. 국내에서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비싸게 구매한 경우도 있으나, 중국에서 생산하여 밀수돼 들어온 스마트폰을 대다수 사용했다. 국경 지역 브로커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중국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친척 등과 국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중개한다. 정부 감시를 피하고자 산악 지대에서 통화하며, 중국 휴대전화 통신망을 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미 지적한 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이 해외 거주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으려면 해외로 전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공정하지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고, 당국에 잡힐 경우 수년 간 옥살이를 해야 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⁴¹

VI. 결론

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은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변화하고 있다. 독립적인 인권 감시 요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중대한 인권 침해 양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구금자가 처한 상황, 또한 외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이들 상황이 특히 우려된다. 외국 국적 납치 피해자 소재 파악에 진전이 없고,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어 한국전쟁 이후 헤어진 가족이 만날 수 있는 상봉 행사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비공식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가 배급 시스템의 구조적 결손을 어느정도 보완하고, 일부 주민에게 여행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가로 부패가 만연하다. 정부가 국내 및 국내외 간 통신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과거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좋아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근래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했고, 일부 권리를 증진하고 실현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 지원으로 여러 계획이 실행 중이다.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권 상황을 보는데, 앞서 언급한 상호 작용으로 생긴 기회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45. 지난 일 년 간 한반도 내 군사 긴장이 고조되어 인권 대화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국제공동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력을 도모하고 적대감을 줄여나가려는 현재의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남북 간 대화 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역내 및 국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한반도 내 주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특히 1953년부터 휴전선을 두고 헤어져 다시 연락을 취할 수 있길 바라는 수천 명의 가족을 위한 것이다.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대체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자국민 최저 생계 유지 및 [경제] 개발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분쟁을 방지하고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선 순위를 변화시키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다.

⁴¹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단의 아픔: 인권으로 접근한 한반도 비자발적 가족 분리(2016)”

46. 책임 규명 요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또한 정부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다. 국제 형사 소추 가능성이 꾸준히 논의되는 와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근래 유엔 인권 조약 기구와 대화했는데, 이를 기회로 중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시정하고 구제할 수 있다. 인신매매, 구금 시설 내 고문 및 학대 행위, 성폭행 및 젠더 폭력 등이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화해 정책을 통해,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가 부패를 척결하고 통치구조(governance)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때 인권 의무 준수를 논의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자국민에게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해 줄 기회이며, 정부가 국제공동체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제공동체 일원은 적절한 자원과 전문성을 제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원해야 하며, 유엔 헌장에 명시한 원칙 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 정책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VII. 권고

47.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강제 복송된 이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처벌이나 보복 행위도 취하지 않는다.
- (b) 북중 국경에 위치한 구금 시설 내 근무자를 포함하여 복송된 아동 및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한 이들을 조사하여 책임을 묻는다.
- (c)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 상주조정실 내 관련 기구,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 인권 메커니즘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구금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논의한다.
- (d) 국내 및 국내외 간 정보 및 통신 접근성 제한을 폐지한다.
- (e) 남북 간 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이 상봉 행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마련한다.
- (f) 일본 국적 납치 피해자 조사를 재개하고, 향후 남북 대화 의제로 대한민국에서 납치된 사례를 포함한다.
- (g)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가운데 뇌물을 받아야만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인권 기준에 맞춰 조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
- (h)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식량 배급 여부를 결정하고, 구금 시설 수감자를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식량 배급을 제공한다.
- (i)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그외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와 협력하여 기술 지원 가능 분야를 모색한다.
- (j) 유엔 인권 조약 기구 권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인권조약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위임권한을 통하여, 유엔 인권 체계와의 협력을 모색한다.

(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

48.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력 노력을 지속하며, 남북 대화 의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의무 논의를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b) 향후 경제 및 인도적 협력 기회가 열린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공공 서비스 제공이 차별없이 책임감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한다.

(c) 남북 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이 때 가족 상봉 행사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권고를 따른다.

49. 특별보고관은 유엔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안보리 제재 조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에 미친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민생을 위협한 정도를 파악한다.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신뢰 및 평화를 구축하려는 유엔 회원국 및 비정부기구 등을 지원한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 때 분명한 모니터링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하며, 최취약 계층에 집중한다.

(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수용한 권고, 유엔 인권 조약 기구 권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권고 등을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e)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도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정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f) 구금 시설 수감자를 포함하여 최취약 계층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50. 특별보고관은 시민사회단체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인권이사회 및 인권 조약기구 권고를 기준으로 모니터링한다.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권 대화 기회를 모색하며, 이 때 주변국 및 아시아 내 개발도상국도 포함하여 대화한다.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계속하여 이어가고, 한편으로는 수혜 대상 가운데 최취약 계층을 파악하여 인도적 지원 기구가 해당국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최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d) 공여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인도적 지원, 분쟁 방지 및 인권 모니터링이 모두 관련되는 역량 강화 조치를 공여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